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
----------	---

제출년월일 : 1998. 4. 18.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에 있어서 특정인에게 행정상 의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공사 및 용역, 물품구매등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에 다수인이 참가하여 입찰 실시 후 낙찰자와 계약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입찰참가자로부터 수수료로 징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시행령, 공연법 시행령 규정에 수수료징수를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시행규칙과 부산광역시위임·위탁에관한조례에 정한대로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 및 출판사·인쇄소 등록관련 등의 수수료 징수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 '98. 1. 1부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되어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공개와 관련한 수수료 금액을 조례로 정하고

○ 건설교통부령 제122호('97. 10. 15)에 의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같은령 제125호('97. 12. 5)에 의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개정 에 따라 사하구제증명등징수조례에 정하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개정하여

○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 징수 목적 및 방법에 입찰참가신청의 경우를 명시(안 제1조, 제6조)
-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에 신설(입찰참가신청서 1건당 10,000원)

○ 문화공보관련 수수료

-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신청 수수료등 10종 신설

-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 보유정보의 공개대상, 공개방법 등에 따른 수수료 별도 규정 [별표2]
 - 수수료 감면사항 규정
- 지적 및 건축관련 수수료
 -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및 열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필지당 1,000원(중전 : 700원, 도면첨부)
 * 우리구가 아닌 시·군 또는 구인 경우 2,000원
 -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 1건당 100원
 * 우리구가 아닌 시·군 또는 구인 경우 200원
 - 건축물대장
 - 등 본 : 1면당 100원(중전 : 1매당 300원, 초과 1매당 100원가산)
 - 초 본 : 1면당 100원(신설)
 - 현황도 : 1면당 100원(신설)
 - 열 람 : 1건당 200원(신설)

3. 관계법령

-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같은법 제130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6조
 - 대법원 판례(97다21253, '97. 10. 14) : 관급공사 입찰수수료는 적법
- 문화공보관련 수수료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
 - 공연법 시행령 제25조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조
 -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
 -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7조
- 지적 및 건축관련 수수료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14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를 “인허가, 입찰참가신청,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요금)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1],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제6조중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를 “신고서, 입찰참가신청서 등에 첨부하게”로 한다.

제8조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고무인 문안중 “제8조 제1항”을 “제8조”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로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별표1]과 [별표2]는 각각 “별지1” “별지2”와 같이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1”

[별표1]

제 증명 등 수수료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	1통	300원	
(2) 인감의 개인신고	1건	200원	일체신고 등은 제외함
2. 병적에 관한 증명			
(1) 병적증명	1통	200원	
3. 신상에 관한 증명			
(1) 신 원	1통	200원	
(2) 부양사실증명	1통	300원	
4.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1통	500원	
(3) 광업, 공업, 상업	1통	500원	
(4) 농가, 비농가	1통	200원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1통	300원	
(3) 수출실적	1통	300원	
(4) 납품실적	1통	300원	
(5) 건물사용	1통	300원	
(6) 공정원료수요	1통	300원	
(7) 분배농지상환완료	1통	300원	
(8)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300원	
(9) 공장등록증명	1통	300원	
(10)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11)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초본 교부			
· 대장, 문서	1통	300원	
· 토지도면	1통	300원	
· 건물도면	1통	300원	
(2) 공부열람			
· 기본료	1시간	100원	
· 초과료	10분당	100원	
(3) 인·허가등록, 지정 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7.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및 열람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필지	1,000원	도시계획도 첨부
· 우리구가 아닌 시·군 또는 구인 경우의 증명	1필지	2,000원	
②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1건	100원	
· 우리구가 아닌 시·군 또는 구인 경우의 열람	1건	200원	
(2) 환지에정지분할	1필지	300원	
(3) 환지에정지에 대한 종전토지분할	1필지	300원	
(4) 환지에정지 변경신청	1필지	300원	
(5) 채비지 분할신청	1필지	300원	
(6)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300원	
(7)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증명	1필지	300원	
8.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증명	1통	300원	
(2)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	1통	300원	
(3) 세목별 과세증명	1통	300원	
(4) 징수유예증명	1통	300원	
9.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300원	
(3) 원천징수공제증명	1통	300원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	1통	300원	
(5)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통	300원	
(6)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7)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300원	
10.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증명	1통	300원	
11. 기타 재증명			
(1) 건축물대장			
① 건축물대장등본	1면	100원	
② 건축물대장초본	1면	100원	
③ 건축물현황도	1면	100원	
④ 건축물대장열람	1건	200원	
(2) 모사전송기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매	100원	
(3) 기타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300원	
(4) 채무 불이행자 명부의 열람·등사	1건	300원	
(5)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300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 행정서사업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3)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건	신규 500원 계속 300원	
(4)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신청	1건	500원	
(5)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2. 산림관계			
(1)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농수산관계			
(1)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4. 상공 및 동력자원관계			
(1)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1건	500원	
5. 건설관계			
(1) 도선장 설치허가신청	1건	1,000원	
(2)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내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3)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신청	1건	1,000원	
(4) 체비지 명의 변경신청서	1건	500원	
(5) 토지사용(체비지) 승락서	1건	500원	
(6)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1건	500원	
(7)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8)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6. 보건사회관계			
(1) 약국 재개업신고	1건	1,000원	
(2) 숙박업신고, 명의변경			
① 호텔업	1건	132,000원	
② 콘도미니엄업	1건	132,000원	
③ 여관업	1건	44,000원	
④ 여인숙업	1건	11,000원	
(3) 목욕장업신고, 명의변경			
① 일반목욕장업	1건	13,200원	
② 특수목욕장업	1건	9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이·미용업신고, 명의변경	1건	13,200원	
(5) 유기장업허가, 명의변경			
① 컴퓨터게임장업	1건	45,000원	
② 종합유원시설업	1건	90,000원	
③ 기타 유기장업	1건	45,000원	
(6) 위생관리 용역업신고, 명의변경	1건	6,600원	
(7) 세탁업신고, 명의변경	1건	6,600원	
(8) 위생처리업신고, 명의변경	1건	6,600원	
(9) 세척제 제조업신고, 명의변경	1건	22,000원	
(10)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신고, 명의변경	1건	6,600원	
(11) 장난감 제조업신고, 명의변경	1건	6,600원	
(12) 이·미용사 신규면허	1건	2,500원	
(13) 이·미용사 면허중재교부	1건	2,200원	
(14) 공중위생업소 변경허가, 신고	1건	(2)~(11) 해당수수료 의 50%	
(15) 공중위생업소 허가·신고중재교부	1건	500원	
7. 개인정보인쇄, 열람, 정정신청			
(1) 개인정보 인쇄	1매	200원	
(2) 개인정보 열람	1건	100원	
(3) 개인정보 정정신고	1건	200원	정정사유가 보 유기관에 있는 경우 면제(공공 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8. 문화공보관계			
(1)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1건	1,000원	
(2)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1건	500원	
(3)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중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4) 공연자 등록신청	1건	2,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공연자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1건	2,000원	
(6) 공연장 설치허가	1건	10,000원	
(7)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5,000원	
(8)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300원	
(9) 출판사·인쇄소 등록신청	1건	500원	
(10) 출판사·인쇄소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1건	300원	
9. 입찰참가신청(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포함)	1건	10,000원	
10.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신설 '97.9.25>	1건	600원	
11. 기 타			
(1)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요율은 부산광역시 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적용한다.			

“별지2”

[별표2]

행정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문서·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도면·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녹음테이프	시청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시청 - 1편이 1켄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켄(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켄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 사진 필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 : 500원 · 1매 초과마다 3"×5" : 200원 5"×7" : 300원 8"×10" :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1매마다 · A3 이상 300원 · B4 이하 250원
도면·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 별도
녹 음 테 이 프		
녹화테이프 (비디오)	시청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0분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 화 필 름		
슬 라 이 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 이 크 로 필 름		
사 진 사 진 필 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 1매 초과마다 3"×5" : 50원 5"×7" : 100원 8"×10" : 150원 복제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지적법 시행령 제67조 및 제68조의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한 지적업무 수수료, 유선 및 도선업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목적)-----인허가, 입찰참가신청,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p>
<p>제 3 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와 같다.</p>	<p>제 3 조(요율) 제증명등 수수료는 [별표1],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p>
<p>제 6 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p>	<p>제 6 조(징수방법) -----신고서, 입찰참가신청서 등에 첨부하게-----</p>
<p>제 8 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생략) (신설)</p>	<p>제 8 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보관중인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p>
8cm	8cm
<p>위 증명은 부산광역시사하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p>	<p>제8조의</p>

[별표] 제증명등수수료

구분	기준	요금	비고
【증명】			
1.~6. (생략)			
7.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시계획확인원 단 도시계획도 또는 지적도 사본첨부의 경우	1필지	300원	첨부도면 1매(21cm x17cm)당 400원 가산
(2)~(7) (생략)			
8.~10. (생략)			
11. 기타 제증명			
(1) 건축물관리대장등본	1매	300원	초과 1매당 100원 가산
(2)~(5) (생략)			

[별표] 제증명등수수료

구분	기준	요금	비고
【증명】			
1.~6. (현행과 같음)			
7.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및 열람			
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우리구가 아닌 시· 군 또는 구인 경우의 증명	1필지	1,000원	도시계획도 첨부
· 우리구가 아닌 시· 군 또는 구인 경우의 증명	1필지	2,000원	
②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1건	100원	
· 우리구가 아닌 시· 군 또는 구인 경우의 열람	1건	200원	
(2)~(7) (현행과 같음)			
8.~10. (현행과 같음)			
11. 기타 제증명			
(1) 건축물대장			
① 건축물대장등본	1면	100원	
② 건축물대장열람	1면	100원	
③ 건축물현황도	1면	100원	
④ 건축물대장열람	1건	200원	
(2)~(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7. (생략) (신설)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7. (현행과 같음) 8. 문화공보관계 (1) 음반·비디오품 유통 관련업자 등록신청 1건 1,000원 (2) 음반·비디오품 유통 관련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3) 음반·비디오품 유통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500원 (4) 공연자 등록신청 1건 2,000원 (5) 공연자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1건 2,000원 (6) 공연장 설치허가 1건 10,000원 (7) 공연장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5,000원 (8) 공연장 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 1건 300원 (9) 출판사·인쇄소 등록신청 1건 500원 (10) 출판사·인쇄소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1건 300원				
(신설)				9. 입찰참가신청(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포함) 1건 10,000원 10. (현행 8과 같음) 11. (현행 9와 같음)				
8. (생략)								
9. (생략)								
(신설)				[별표2] 행정정보공개수수료 “별지2”와 같음				